



제2302호
2026년 8월 20일
목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의회사무국 공 고	제 2 1 호	「남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2
○ 의회사무국 공 고	제 2 2 호	「남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22
○ 의회사무국 공 고	제 2 4 호	「남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32
○ 의회사무국 공 고	제 2 5 호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46
○ 의회사무국 공 고	제 2 6 호	「남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53
○ 의회사무국 공 고	제 2 7 호	「남동구 공공부문 드론 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65
○ 의회사무국 공 고	제 2 8 호	「남동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75
○ 의회사무국 공 고	제 2 9 호	「남동구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87
○ 의회사무국 공 고	제 3 0 호	「남동구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97
○ 의회사무국 공 고	제 3 1 호	「남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의 회 사 무 국	105

회 람								
--------	--	--	--	--	--	--	--	--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6-21호

남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20.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의 기본 원칙을 정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성과 평가 등 환류체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공부문 선도, 탄소중립 생활 실천 지원 등 구체적 이행 시책을 대폭 신설·정비하여 남동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 사항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정의, 기본원칙 및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5조)
-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 적응대책 및 구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10조)
- 남동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제13조)
- 온실가스 감축 시책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 제17조)
-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 취약계층 보호 및 책임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 제23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6. 8. 20. ~ 8. 27.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완수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286
----------	------

발의연월일: 2026년 8월 20일

발 의 자: 기완수 의원

찬 성 자: 최영식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현행 조례의 한계를 보완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의 기본 원칙을 정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성과 평가 등 환류체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공부문 선도, 탄소중립 생활 실천 지원 등 구체적 이행 시책을 대폭 신설·정비함으로써 남동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 사항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기본원칙 및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5조)
-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 적응대책 및 구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제10조)
- 남동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제14조)
- 온실가스 감축 시책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 ~ 제18조)
-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 취약계층 보호 및 책임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 제24조)

□ 본 문: “별첨”

□ 참고자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2조, 제13조, 제22조, 제40조, 제78조, 제79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동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

1.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한다.
2.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을 균형 있게 추진한다.
3. 환경·경제·사회의 조화를 고려한다.
4. 구민·기업·민간단체 및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한다.
5.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 자료에 기반하여 정책을 추진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정책의 추진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관계 기관, 기업, 학교 및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 및 사업자의 책무) ①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절약과 자원순환을 실천하고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사업자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노력

하고 남동구의 탄소중립 정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제6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구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구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남동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탄소중립비전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3. 구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2.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
3.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사항
4.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5. 교육·홍보 및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재원조달 및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인천광역시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인천광역시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적응대책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구역의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인천광역시시장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인천광역시시장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 결과는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의 수립·변경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구의회 보고) 구청장은 법 제7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

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및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남동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남동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제11조(남동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기능)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동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점검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변경 및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2.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환경·에너지·도시계획·교통·산업 등 관련 분야 전문가
4. 시민사회단체 및 관계기관 추천자
5. 그 밖에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경제인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간사, 수당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4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

제15조(공공부문의 탄소중립 실천) ① 구청장은 공공부문이 탄소중립 실

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청사의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친환경 공공조달 및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용차량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친환경자동차를 우선 고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대중교통 이용, 걷기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친환경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교통 정책에 구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자원순환 및 녹색생활) 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사용·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이용과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학교, 기업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운동을 활성화할 수 있다.

제18조(탄소중립 생활실천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자원순환, 친환경 소비 등 생활실천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도록 노력할 수 있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19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인천광역시, 교육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하거나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0조(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① 구청장은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폭염, 한파 등 기후재난에 대비하여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1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 공동주택, 기업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탄소중립 교육과 홍보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주민참여 및 실천문화 확산) ① 구청장은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탄소중립 실천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3조(포상) 구청장은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기업 또는 기관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구청장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업무 소관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른 남동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남동구 기후위기 대응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남동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해당 위원이 위

축된 날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8조(적응대책의 수립·시행)
- 제14조(위원회의 운영)
- 제21조(교육 및 홍보)
- 제23조(포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시 1억 5천만원 미만의 한시적 경비로 예상되며 위원회 운영,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경비는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됨.

작성자 : 환경교통국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참고자료]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협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하 “순배출량”이라 한다)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4. “탄소중립 사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기술·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말한다
14.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제12조(시·군·구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기본계획, 시·도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군·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군·구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시·군·구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

련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가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① 위원장은 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시·군·구계획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할 시·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방법 및 공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제4항(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

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제4항에 따른 심의 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40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기후위기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시·도지사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및 변경,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국회 보고 등) ① 정부는 국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계획 또는 시·군·구계획을 수립·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도계획 또는 시·군·구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회와 지방의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고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국회 보고 및 지방의회 보고의 시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①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요건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6-22호

남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20.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소규모 일부 공사에도 해체허가 절차가 적용되는 등 일부 규정의 운영상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건축물관리법」의 취지에 맞게 해체허가 대상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과 교육 시설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건축물 해체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건축물 일부 해체공사에 대한 해체허가 대상 기준 정비 (안 제8조의2)
- 해체허가 대상 시설물의 적용기준 변경 및 확대 (안 제8조의2제1호)
-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해체허가 대상 신설·정비 (안 제8조의2제3호)

3. 입법예고 기간 : 2026. 8. 20. ~ 8. 27.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주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287
----------	------

발의연월일 : 2026년 8월 20일

발 의 자 : 이영주 의원

찬 성 자 : 이학정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소규모 일부 공사에도 해체허가 절차가 적용되는 등 일부 규정의 운영상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건축물관리법」의 취지에 맞게 해체허가 대상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과 교육시설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건축물 해체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건축물 일부 해체공사에 대한 해체허가 대상 기준 정비 (안 제8조의2)
- 해체허가 대상 시설물의 적용기준 변경 및 확대 (안 제8조의2제1호)
-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해체허가 대상 신설·정비 (안 제8조의2제3호)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건축법」 제2조제7호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2(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해체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 버스정류장

나.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다. 횡단보도

라.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3.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주변 여

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다중이용건축물에 연접한 보행자우선도로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보차혼용도로)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마.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의2(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 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 로부터 직선거리 25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 한다. 1. 버스 정류장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3.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 로”란 폭 25미터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주 변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 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이 지 상 3층인 경우로서 3면 이상이 인접 건물에 접하는 경우를 말 한다.	제8조의2(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구청장의 해체허가를 받아 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 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 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 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 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 다. 가. 버스정류장 나.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다. 횡단보도 라.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

로"란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
를 말한다.

3.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
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가. 다중이용건축물에 연접한
보행자우선도로

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보차혼용도
로)

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라. 「유아교육법」 제2조제2
호에 따른 유치원

마.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이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 각 호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기준(주변 시설과의 거리, 도로 폭, 주변 여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개정 조례안 중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은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기준을 구체화하는 규정으로서 구 예산상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없거나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작성자 : 도시국 건축과장 정근주

[참고자료]

「건축법」 제2조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7.>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2. 3.>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6-24호

남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20.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위한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중독문제의 예방·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수행 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사업 홍보 및 운영비 지원 (안 제7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6. 8. 20. ~ 8. 27.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철상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289
----------	------

발의년월일 : 2026년 8월 20일
발 의 자 : 이철상 의원
찬 성 자 : 김영조 의원 5명

☐ **제안이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위한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중독문제의 예방·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수행 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사업 홍보 및 운영비 지원 (안 제7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 같은 조 제3호, 제15조 및 제15조의3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0조 및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 및 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남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말한다.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의 3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남동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말한다.
4. “센터”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말한다.

제3조(설치)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

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한다.

② 구청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③ 센터는 남동구 관내에 둔다.

제4조(업무)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2. 정신질환자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조기발견 · 상담 · 등록 ·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 연계
3. 주간재활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5. 지역 내 정신건강사업에 대한 자문
6.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정신건강 환경조성
7. 정신질환자 가족교육 및 모임 지원
8.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9.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1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사업
11.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 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지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중독 문제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신건강 증진 및 중독문제 예방·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의료·교육·경찰·소방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운영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 또는 중독관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사업 홍보 및 운영비 지원)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로 캠페인 및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또는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남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남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지원비, 사업비 등 지원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승인 및 동의)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의 기준가격 : 2026년 정신건강사업안내
 - 인건비는 연간 인상률(3.5%) 적용 추산
 - 운영지원비는 2026년도 지원기준 반영
- 비용추계의 기간 : 2026년 ~ 2030년
- 비용추계의 범위 : 남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남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건비, 운영지원비, 사업비 등

나. 추계 결과

- 추계기간 : 2026년 ~ 2030년(5년)
- 발생비용 : 11,355,122천원
 - 남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 9,756,827천원 (기48, 시26, 구26)
 - 남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 1,598,295천원 (국45, 시24, 구31)

다. 재원조달 방안

- 센터 운영에 따른 구비 3,032,751천원 확보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작성자 : 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장 우희정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 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계
세 입		1,602,826	1,621,347	1,659,710	1,699,061	1,739,427	8,322,370
기금·시비보조금		1,392,127	1,405,188	1,438,091	1,471,982	1,506,888	7,214,276
국시비보조금		210,699	216,159	221,619	227,079	232,539	1,108,095
세 출		2,168,684	2,218,557	2,269,708	2,322,176	2,375,997	11,355,122
남동구청신건강복지센터 운영		1,863,585	1,906,178	1,950,049	1,995,237	2,041,778	9,756,827
남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 센터운영		305,099	312,379	319,659	326,939	334,219	1,598,295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707,976	717,789	734,217	750,974	768,069	3,679,025
	보조금	국비	135,999	139,639	143,279	146,919	716,395
		시비	571,977	578,150	590,938	604,055	2,962,630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565,858	597,210	609,998	623,115	636,570	3,032,751
	구비		565,858	597,210	609,998	623,115	3,032,751
지 방 채							
기 금		894,850	903,558	925,493	948,087	971,358	4,643,345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자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4., 2024. 1. 2.>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제38조의3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나.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

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

⑧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제8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내 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
2.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
3.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4. 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5. 그 밖에 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0조(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 8. 19., 2025. 3. 25.>

1.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법 제15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단체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업무는 같은 항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③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정신건강 또는 중독관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⑤ 센터장은 매년 사업계획 및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 ⑥ 센터장은 법 제15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6-25호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20.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남동구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후생복지시설의 범위에 마음상담실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마음상담실 명시 : (안 제6조제2호)

3. 입법예고 기간 : 2026. 8. 20. ~ 8. 27.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햇님·장성란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280
----------	------

발의년월일 : 2026년 8월 20일

발 의 자 : 이햇님·장성란 의원

찬 성 자 : 최영식 의원 외 6명

☐ 제안이유

- 남동구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후생복지시설의 범위에 마음상담실을 명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마음상담실 명시 : (안 제6조제2호)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소속공무원의 보건 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마음상담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후생복지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1. (생략) 2. <u>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u> 를 위한 체력단련실 3. (생략)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 ----- ----- -----. 1. (현행과 같음) 2. <u>소속공무원의 보건 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마음상담실</u> 3.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안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따라 청사 내 마음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있어 비용 발생 예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청사 내 마음상담실 설치 및 향후 운영에 따른 예상 소요경비가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 행정국 총무과장 박 대 원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6-26호

남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20.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지원 실태조사, 민원상담 시간 조정, 신속한 지원결정,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지원에 따른 실태조사 신설 : (안 제5조제2항)
- 민원상담 1회당 권장시간 조정 : (안 제7조제9호)
- 지원 결정기한 단축 : (안 제10조제2항)
- 상담·검사 관련 개인정보 보호 및 불이익 금지 : (안 제11조)
-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 (안 제13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6. 8. 20. ~ 8. 27.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햇님·장성란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281
----------	------

발의년월일 : 2026년 8월 20일

발 의 자 : 이햇님·장성란 의원

찬 성 자 : 최영식 의원 외 6명

☐ 제안이유

-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지원 실태조사, 민원상담 시간 조정, 신속한 지원결정,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지원에 따른 실태조사 신설 : (안 제5조제2항)
- 민원상담 1회당 권장시간 조정 : (안 제7조제9호)
- 지원 결정기한 단축 : (안 제10조제2항)
- 개인정보 보호 및 불이익 금지 : (안 제11조)
-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 (안 제13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경우 특이민원 발생 현황, 지원제도 이용실적,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환경 및 직무스트레스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제9호 중 “30분”을 “20분”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30일”을 “10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개인정보보호 및 불이익 금지)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신청, 심리상담 등의 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 처리 담당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심리상담 참여 여부, 상담 내용 및 결과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감사·근무성적평정 등의 자료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특이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치유하기 위하여 관할 수사기관, 의료기관, 전문상담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생략) <u><신 설></u>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현행과 같음) <u>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경우 특이민원 발생 현황, 지원제도 이용실적,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환경 및 직무스트레스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u>
<u>② (생략)</u>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및 근무여건 개선 등)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과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마련하여야 한다. 1. ~ 8. (생략) 9. 민원상담(통화·면담) 1회당 권장시간은 민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u>30분</u>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10. (생략)	<u>③ (현행 제2항과 같음)</u>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및 근무여건 개선 등) ----- ----- ----- ----- -----. 1. ~ 8. (현행과 같음) 9. ----- ----- ----- <u>20분</u> ----- -----. 10. (현행과 같음)
제10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제10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④ (생략)

<신설>

<신설>

----- 10일 -----
-----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11조(개인정보보호 및 불이익 금지)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신청, 심리상담 등의 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 처리 담당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심리상담 참여 여부, 상담 내용 및 결과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감사·근무성적평정 등의 자료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특이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치유하기 위하여 관할 수사기관, 의료기관, 전문상담기관 및

	<u>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u>
--	---------------------------------------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비용 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 발생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행정국 민원여권과장 김 영 란

[참고자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민원 처리 담당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담당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호출장치·보호조치 음성안내 등 안전장비의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
2.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방지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휴대용 영상 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의 운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 가. 폭언·폭행
 - 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
 - 다.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행위라.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4.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인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담당자의 분리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료 및 상담

지원

5의2. 폭언·폭행 등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민원인에 대한 수사기관에의 고발

5의3. 담당자가 제5호의2에 해당하는 민원인에 대한 고소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고소를 위한 행정적·절차적 지원

6.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

7.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 시간 설정. 이 경우 민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권장 시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8. 다음 각 목의 경우 전화나 면담의 종료 조치. 이 경우 그 조치 전에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가.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한 경우

나. 제7호에 따른 권장 시간을 상당히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과 담당자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하고,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등 소송 수행이나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3호나목·다목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이나 자치법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6-27호

남동구 공공부문 드론 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공공부문 드론 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20.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드론의 공공 분야 활용 확산에 대응하여 남동구 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구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지방자치법」 제28조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3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6. 8. 20. ~ 8. 27.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공공부문 드론 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서주영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282
----------	------

발의년월일 : 2026년 8월 20일
발 의 자 : 서주영 의원
찬 성 자 : 이학정 의원 외 3명

□ 제안이유

- 드론의 공공 분야 활용 확산에 대응하여 남동구 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구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 (안 제3조)
- 적용 범위 : (안 제4조)
- 드론 활용 운영 종합계획 수립 : (안 제5조)
- 드론 활용 실태조사 : (안 제6조)
- 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 사업 : (안 제7조)
- 예산의 지원 : (안 제8조)
- 협력체계의 구축 : (안 제9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28조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3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공공부문 드론 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공공부문 드론 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수요 충족을 통한 구민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부문의 드론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각종 행정 업무에 드론을 적극 활용하고, 드론 활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제5조(드론 활용 운영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드론 활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드론 활용 운영 종합계획(이

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드론의 공공부문 운영 목표 및 추진 방향
2. 드론의 공공부문 활용 및 운영 방안
3. 드론 활용 기반 조성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드론 안전 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드론의 공공부문 활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드론 활용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 사업) 구청장은 공공부문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적 및 지적재조사 등 드론을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
2. 사진·동영상 촬영과 연계된 구정 활동 지원
3. 방재·재난·구조·구호·실종자 수색 지원 등의 업무
4. 산림, 공원 및 하천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
5.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
6. 문화재 관리 및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
7. 공공부문 드론 활용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8. 드론 관련 안전, 보안관리 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드론의 공공부문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드론의 공공부문 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남동구 공공부문 드론 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원 발의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남동구 공공부문 드론 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8조(예산의 지원)에 따라 소요예산이 연평균 3,000,000원~6,000,000원으로 예상되므로 미첨부함.

작성자 : 행정국 토지정보과장 남 석 진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나.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다. 그 밖에 원격·자동·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

2. “드론시스템”이란 드론의 비행이 유기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드론, 통신체계, 지상통제국(이·착륙장 및 조종인력을 포함한다), 항행관리 및 지원체계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3.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관리·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드론사용사업자”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드론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운송,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드론교통관리”란 드론 비행에 필요한 각종 신고·승인 등 업무의 지원 및 비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비행경로 관리 등 드론의 이륙부터 착륙까지의 과정에서 필요한 관리 업무를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안전법」 제2조 및 「항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을 포함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방역·보건·측량·감시·구호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7., 2025. 12. 2.>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6-28호

남동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20.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공공시설 공간 개방을 통해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공유문화 확산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공공시설의 개방 (안 제5조)
- 사용자격, 사용신청 (안 제6조~제7조)
- 사용허가 제외, 취소·제한, 사용료 (안 제8조~제10조)
- 변상책임, 양도 및 전대금지 (안 제11조~제12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6. 8. 20. ~ 8. 27.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이학정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283
----------	------

발의년월일 : 2026년 8 월 20일

발 의 자 : 이학정 의원

찬 성 자 : 최영식 의원 외 4명

☐ 제안이유

- 공공시설 공간 개방을 통해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공유문화 확산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공공시설의 개방 (안 제5조)
- 사용자격, 사용신청 (안 제6조~제7조)
- 사용허가 제외, 취소·제한, 사용료 (안 제8조~제10조)
- 변상책임, 양도 및 전대금지 (안 제11조~제12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제153조, 제156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개방 가능한 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하여 주민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며 공유문화 확산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남동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목적의 시설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업무 등에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 주민에게 개방하는 공간을 말한다.
3. “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그 밖에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개방공간에 대해 남동구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란 사용허가를 받아 공간 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의 개방 가능한 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공간을 확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이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방공간의 사용으로 인하여 해당 공공시설의 본래 기능 수행 및 기존 이용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고령자 등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개방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를 우선 적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공공시설의 개방)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개방 가능한 공간을 시설의 설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에게 개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당 시설의 보안관리,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개방공간과 시간 등을 정한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경우 개방공간, 개방시간 등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사용자격)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구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3. 구에 소재하는 단체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제7조(사용신청 등) ① 구민이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제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공공질서·미풍양속에 위반되는 경우
2. 시설의 안전 또는 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영리 목적,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 또는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소음, 주차 등으로 인근 주민의 평온한 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다른 구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 개방공간의 사용료 부과·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이용기간 동안 개방공간을 성실히 관리해야 한다.

② 사용 중 시설이 훼손된 경우,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개방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이나 단체에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공공시설의 개방 가능한 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존 공공시설 및 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사항임. 다만, 시설 개방에 따른 관리비, 공공요금 등 일부 부수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됨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시행에 따라 일부 시설의 개방.운영과정에서 관리비, 공공요금 등 부수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존 시설 및 관리체계 범위에서 운영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일 것으로 판단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작성자 : 재정경제국 재무과장 황 수 연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1호.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 차. (생략)

3 ~ 7호.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 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③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항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사용허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6-29호

남동구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남동구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20.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기본원칙 및 기본계획 수립 (안 제4조~제5조)
-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사업 (안 제6조)
- 비반려인과의 조화 (안 제7조)
- 위탁, 시범사업, 재정지원, 교육·홍보 (안 제8조~제11조)
- 민관 협력체계, 정책평가, 포상 (안 제12조~제14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6. 8. 20. ~ 8. 27.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김진형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284
----------	------

발의년월일 : 2026년 8 월 20일

발 의 자 : 김진형 의원

찬 성 자 : 이학정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이 조례는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기본원칙 및 기본계획 수립 (안 제4조~제5조)
-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사업 (안 제6조)
- 비반려인과의 조화 (안 제7조)
- 위탁, 시범사업, 재정지원, 교육·홍보 (안 제8조~제11조)
- 민관 협력체계, 정책평가, 포상 (안 제12조~제14조)

☐ 본 문 : “별첨”☐ 참고자료

- 「동물보호법」 제1조, 제2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서 정한 동물 중 개, 고양이를 말한다.
2. “반려동물 친화도시”란 사람과 반려동물이 안전하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도시를 말한다.
3. “반려동물 친화생활권”이란 공원, 산책로, 광장 등 주민 생활공간에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생활권을 말한다.
4.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기르는 주민을 말한다.
5. “비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기르지 아니하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부서 및 기관과 협력하

여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구청장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람과 반려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2.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상호 배려
3. 주민 안전과 공공질서의 확보
4.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반려견 놀이터 등 반려동물 문화공간의 조성 및 확충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남동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 제5조에 따른 동물복지계획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사업) 구청장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친화생활권 조성
2. 공원, 산책로 등 공공시설에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3. 주민참여형 공존문화 조성
4.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 예방 및 조정
5. 그 밖에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비반려인과의 조화) 구청장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
진하는 경우 비반려인의 생활환경과 안전을 고려하고, 반려인과 비반
려인 간의 상호 배려와 갈등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
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9조(시범사업) 구청장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활동하는 법인·단체 또는 주민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홍보) 구청장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상호 이해와 배려를 증진하고 지역사회 공존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민관 협력체계) 구청장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계 기관, 대학, 기업,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정책평가) 구청장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 구청장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상기 규정과 같이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작성자 : 재정경제국 농축수산과장 박 광 철

[참고자료]

□ 동물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생명 존중의 국민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생략

7. “반려동물”이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6-30호

남동구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20.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무인점포의 증가에 따라 화재, 범죄, 안전사고 등 각종 위험에 대한 예방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무인점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 및 사업자의 책무 (안 제3조)
- 무인점포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근거 마련 (안 제4조)
- 무인점포 안전관리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6. 8. 20. ~ 8. 27.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최영식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285
----------	------

발의년월일 : 2026년 8월 20일

발 의 자 : 최영식 의원

찬 성 자 : 이학정 의원 외 4명

☐ 제안이유

- 무인점포의 증가에 따라 화재, 범죄, 안전사고 등 각종 위험에 대한 예방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무인점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 및 사업자의 책무 (안 제3조)
- 무인점포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근거 마련 (안 제4조)
- 무인점포 안전관리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본 문 : “별첨”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내 소재하는 무인점포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화재, 범죄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인점포 이용자의 안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인점포”란 운영 과정에서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 없이 이용자가 무인결제 장치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직접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점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무인점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범죄, 시설물 사고 및 그 밖의 위험요인으로부터 이용자 및 점포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예방 및 대응 활동을 말한다.
3. “사업자”란 무인점포를 실제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인점포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무인점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범죄 등 각종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무인점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하여 무인점포 운영 실태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안전관리 사업 등) ① 구청장은 무인점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무인점포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마련 및 보급
2. 사업자 대상 안전교육 및 컨설팅
3. 무인점포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점검
4. 무인점포 이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문화 확산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무인점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매장 내·외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2. 비상벨, 경보시스템 등 물리적 방범 장치 설치
3.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을 위한 출입관리 시스템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무인점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남동구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제5조(안전관리 사업 등)에 따른 가이드보급, 안전교육 등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할 경우 일반적인 수준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271개소
 - 무인세탁소, 냉동식품(아이스크림등) 판매점 등 별도(자유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미만

3. 미첨부 사유

- 정확한 비용추계 산출을 위해선 미신고영업 무인점포에 대한 조사등이 필요하겠으나, 무인점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무인커피숍(영업신고대상)의 업소수가 271개소임을 감안하여 관내 무인점포의 수는 500여개수준이 될 것으로 추계
- 다음의 영업장관리에 소요되고 있는 예산과 비교할 때 소요비용은 4,000천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함.
 - 문화관광과 : 문화유통업 759개소(노래연습장, PC방, 게임장 등)
 - 유통업사업자 교육 등 자료 유인 : 1,500천원
 - 유통업사업자 협회위탁교육 : 5,000천원

작성자 : 안전교육국 안전총괄과장 최 현 철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6-31호

남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 8. 20.

남 동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최근 정신질환, 극심한 심리·정서적 위기 등으로 인한 정신건강 위기상황이 자살, 자해·타해 등 중대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위기대상자를 조기에 식별하고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지역사회 대응체계의 구축이 중요해짐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경찰, 소방,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 협력체계 구축 및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제7조)
-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제10조)
- 예산지원 및 개인정보 보호 등 그 밖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및 제12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6. 8. 20. ~ 8. 27.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김용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288
----------	------

제출년월일 : 2026년 8월 20일

발 의 자 : 김용호 의원

찬 성 자 : 장성란 의원 외 14명

□ 제안이유

- 최근 정신질환, 극심한 심리·정서적 위기 등으로 인한 정신건강 위기상황이 자살, 자해·타해 등 중대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위기대상자를 조기에 식별하고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는 지역사회 대응체계의 구축이 중요해짐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경찰, 소방,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 협력체계 구축 및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제7조)
-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제10조)
- 예산지원 및 개인정보 보호 등 그 밖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및 제12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1조 및 제12조, 제44조, 제50조, 제64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안전한 지역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정신건강 위기상황”이란 정신질환 또는 정서적·심리적 위기로 인하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상담, 평가, 개입, 치료 또는 보호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

으로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응급정신질환자 및 정신질환자(이하 “정신질환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2.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인천남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3. 남동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및 소방서
4. 응급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5.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기관
6. 그 밖에 정신건강 위기상황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공동대응 절차, 비상연락체계 및 업무지

침 등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협의체의 설치)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 대응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역할 분담
2.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치료 및 회복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
3. 응급입원·행정입원 및 정신응급 병상의 확보·연계 및 운영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 위기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남동구 정신건강증진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정신건강 위기대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남동구의회
2. 인천남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3. 남동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또는 소방서
4. 정신건강증진시설
5.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기관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 위기대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

⑤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이 된다.

⑥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회의)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8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① 구청장은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조치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신건강 위기상황의 신고·접수, 의료기관 연계, 입원 등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근 타 시·구

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사례관리 및 회복 지원체계) 구청장은 정신질환자 등이 퇴원 또는 응급조치 이후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복지기관, 주거·고용지원기관 등과 연계하여 사례관리 및 회복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정신건강 위기대응 사업)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신건강 위기상황의 조기 식별을 위한 홍보, 교육 및 상담
2.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 보호, 이송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3.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치료, 재활 및 회복 지원
4. 응급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 사후관리 및 재발 방지 지원
5. 응급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6. 관계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7.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및 인식 개선
8.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 위기상황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지원)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정신건강 위기상황 대응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 등의 치료와

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2. 법 제44조 및 법 제50조에 따른 입원비
3.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비
4. 응급정신질환자에 대한 심리검사 및 상담 등 종합 심리지원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5. 응급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사후관리 및 가족 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정신건강 위기상황의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2조(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협의체에서 개별 사례를 다루는 경우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나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을 위하여 구성·운영 중인 협의체가 제5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협의체로 본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및 협의체 구성·운영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작성자 : 보건소 치매정신건강 과장 우희정

[참고자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제38조의3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 나.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5. “정신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의료법」에 따른 정신병원
 - 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의원
 - 다.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로서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기관
6. “정신요양시설”이란 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정신재활시설”이란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8. “동료지원인”이란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이었던 사람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동료지원인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제11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와 만성화 방지를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상 문제(우울·불안·고독 등 정신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문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교육·상담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범위, 대상 및 내용 등과 제3항에 따른 조기치료비 지원의 대상 및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전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지원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계획의 시행계획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계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지원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

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시행하는 경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두고,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및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경찰관(「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진단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제3항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이하 “지정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에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입원 사유·기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입원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⑦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진단 결과 그 정신질환자가 계속 입원할 필요가 있다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치료를 위한 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 ⑧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른 입원 의뢰를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계속하여 입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간, 제55조에 따라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진단하거나 입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한 행동을 할 때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이하 “구급대원”이라 한다)에게 호송을 위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⑩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및 지정취소 기준,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그 사람을 호송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응급입원이 의뢰된 사람을 3일(공

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응급입원을 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그 응급입원한 사람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여야 한다.

⑤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 결과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계속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⑥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켰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입원이 필요한 사유·기간 및 장소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4조(외래치료 지원 등) ①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43조와 제44조에 따라 입원을 한 정신질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을 하기 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행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질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 또는 외래치료를 받았던 사람으로서 치료를 중단한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람에 대한 외래치료의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외래치료를 받도록 정신질환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 본인 및 그 보호의무자와 외래치료 지원을 청구한 정신의료기관의 장, 정신건강복지센터

의 장 및 외래치료 지원을 하게 될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이 그 외래치료 지원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료를 중단한 때에는 그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명령을 받은 사람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평가를 받도록 명령하는 경우 구급대원에게 그 사람을 정신의료기관까지 호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철회하고,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1조에 따라 자의입원등을 신청하게 하는 것
2. 제42조에 따라 동의입원등을 신청하게 하는 것
3. 보호의무자에게 제43조제1항에 따른 입원등 신청을 요청하는 것
4. 제44조제7항에 따라 입원하게 하는 것(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⑧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치료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는 경우에는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외래치료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⑩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의 청구절차와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의 집행절차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사실과 지정내용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이하 “지정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사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